

## 「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안」

# 검 토 보 고 서

본 규칙안은 2019년 1월 14일 지광천 의원이 발의하였고, 2019년 1월 21일 조례·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.

### 1. 제안이유

- 「평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」을 제정하여 평창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연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적용범위(안 제2조)
- 나.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(안 제4조 ~ 제7조)
- 다. 국외연수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(안 제8조 ~ 9조)

### 3. 검토의견

- 본 규칙안은 평창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공무국회 연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규칙안의 형식은 본칙 1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안 제2조에서는 이 규칙에서 적용하는 공무국외연수의 범위, 안 제4조에서는 심사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, 안 제5조에서는 공무국외연수 심사에 필요한 기준,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연수계획서와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으며,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.

- 강원도내 본청을 비롯한 14개 시·군에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 시행중에 있는 사항으로, 검토결과 규칙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.

#### 4. 참고자료 :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

## 【관계법령】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33조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.

1.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(補填)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
2. 본회의 의결,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
3.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

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9. 4. 1.>

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